

전쟁, 소유, 박탈 : 전시 “가옥상실”과 “가옥파괴”의 자리에서

김 예 립*

〈차 례〉

1. 전시 생명정치와 장과 난민됨
2. 소유와 박탈 그리고 전쟁 빈곤 사회
3. 수용소 혹은 가옥을 둘러싼 정책과 그 한계
4. 사회의 파상(破狀)과 ‘작은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상상

〈국문요약〉

이 글은 한국전쟁기 피난민 및 전재민의 난민됨의 상황을 ‘집의 상실과 파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기존 연구는 피난민이나 전재민 문제를 정치적 맥락에서 다루어 왔으나 전쟁이 극히 사회경제적 사태이기도 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사건으로서의 전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이 기존의 소유(권) 질서를 광범위하고도 급격하게 동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소유(권)의 상실, 모호, 몰수 등의 방식으로 일어났다. 이 글은 피난민과 전재민의 상황을 ‘박탈’로 파악하고 특히 ‘집’의 상실과 파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폭격과 점령 그리고 수복이라는 일련의 전쟁 과정은 대규모의 집-상실자를 낳았다. 전쟁 빈곤 사회의 비참은 국가에 의해 발견되었고, 연동하여 생명

관리 통치가 작동했다. 수용 공간 제공이라는 피난민·전재민 보호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시 법적 근거 없이 폭력적으로 진행된 “역산” 불법 취득도 금지했다. 부역자의 재산을 의미하는 “역산”은 군경 세력의 재산 약탈을 증명하는 역사적 용어로 특히 “역산가옥” 탈취는 치안권력의 불법적인 재산 약탈 상황을 압축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국가의 생명관리 정책과 행정의 한계는 분명했다. 피난민과 전재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은 ‘사회 공동체’로 넘어왔지만 부동산 소유자의 사적 이해 관철은 공적 요구에 냉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거-거주의 장소를 잃어버린 빈한한 존재들의 삶의 곤경은 해결되기 어려웠다. 이들은 피난과 전재로 여기 저기 떠돌아야 했지만 사실은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난민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한국현대문학.

이 되었던 것이다.

핵심어: 한국전쟁, 소유(畝), 난민, 박탈, 가옥, 수용소, 역산(逆産)

1. 전시 생명정치의 장과 난민됨

김동춘은 피난, 점령, 학살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과정과 성격을 규명하면서 한국 전쟁을 “미국의 한반도 개입사이자 국가의 탄생사이며, 국민의 형성사이고 사회운동과 계급 갈등의 강압적 소멸사”¹⁾로 파악했다. 이 선구적인 작업을 통해 한국전쟁의 내전적 역학, 전쟁을 통해 자기 전개와 유지의 기술을 획득해간 분단 반공국가의 잔인성과 무능함 그리고 생사여탈권의 행사에 종속되어 버린 인민의 상태가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 피난, 점령, 학살은 한국전쟁에 대한 군사사적, 정치외교사적 접근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사회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 온 문제다.²⁾ 피난, 점령, 학살이라는 세 사회정치적 장면은 약간씩 질감의 차이를 보이지만 열전을 치르는 국가의 적나라한 작동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같은 구도 안에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작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쟁과 국가는 모두 폭력 행사의 형식이다. 들뢰즈는 투쟁, 전쟁, 범죄, 경찰 등 “다양한 폭력 체제”를 구별하면서 국가 경찰과 법의 폭력을 앞의 경우들과는 매우 다른, “포획하고 장악하는 동시에 포획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하는 폭력” 즉 “모든 종류의 직접적 폭력과 대립”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정의했다.³⁾ 전쟁의 폭력과 국가-경찰-법의 폭력이 서로 다른 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전쟁 중인 국가 특히 내전 중인 국가는 물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동시에 실행하기에 그 폭력성은 증강되기 마련이다. 전투적 폭력

1)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5, 9쪽.

2) 국내의 한국전쟁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는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32, 2015 참고. 이 논문은 전쟁의 기원과 발발에 대한 연구와 전개에 대한 연구로 분류하고 후자를 다시 군사사, 정치·외교사, 사회사 영역으로 세분하여 동향을 정리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사 영역은 학살, 점령, 피난, 여성, 사회구조와 의식을 고찰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구술사 등 연구방법론의 다각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3) 들뢰즈에 의하면 투쟁은 “원시적 폭력체계”로 “주먹에는 주먹이라는 식의 폭력”이며 전쟁은 국가 장치에 맞서는 폭력의 총동원과 자율화를 의미하기에 원시적 폭력과 다르다. 이에 비해 범죄는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한 무언가를 뺏는 비합법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원시적 폭력이나 전쟁과 차이를 갖는다. 질 들뢰즈,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860쪽.

은 기본적으로는 교전국을 겨누고 있지만 언제나 자국 국민을 향해서도 가해지면서 이중화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부를 향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폭력의 대상 자체를 결정하는 “경찰적 폭력”⁴⁾이 함께 작용한다. 교전 중에 그리고 교전과 맞물려, 자국의 인민을 상대로 구현되는 국가 폭력은 “폭력이 폭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창조하는 데 기여할 때마다 법의 폭력이 행사”⁵⁾되는 논리를 여실히 증명한다.

이 점은 학살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된다. 전쟁 발발과 함께 시작된 예비검속이나 학살은 미군정이 폐지했으나 법 운용상에서는 살아남아 관행화된 경찰의 행정 검속을 근거로 실행되었고, 헌병대의 민간인 예비검속 역시 계엄 선포의 틀을 넘나들며 자행되었다.⁶⁾ 이 과정은 폭력 행사 근거로서의 법을 활용하거나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일어났고 또 폭력 남용에 제한을 가하려는 법들을 무시하며 진행되었다. 이처럼 법적인 동시에 초법적으로 자행된 학살에 대해, 강성현은 “법의 바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타당하게 지적했다.⁷⁾ 전체적으로 볼 때 학살은 결정하는 폭력과 실행하는 폭력을 중층적으로 가동하면서 적용 대상을 생산, 결정, 색출, 절멸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학살은 자명하게 죽음-정치(necro-politics)다.

학살이 죽음 정치의 결과였다면 피난은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가질까. 학살이 ‘위험한’ 존재의 살육을 향한 돌진이라는 점을 가릴 것 없이 전시하는 데 비해, 피난과 전제 구호는 어쨌든 살기 위한 움직임들이 형성하고 형성되는 장이다. 그러므로 학살에 견주어 본다면 통치의 차원에서 이것은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 관리하는 영역이다. 물론 한국전쟁기 피난과 전제 관련 대책은 이 관리에 충실하거나 유능하지 않았다. 법적, 행정적 대처는 온전하지 않았고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았다. 특히 피난의 경우 근본적으로 군사적·정치적 필요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난민은 생존을 찾아 떠나는 과정과 도착지에서 술한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피난과 전제 구호는 원리상, 형식상 그 자체로 죽음-정치가 벌어지는 장은 아니지만 전시 현실에서는 그것과 종종 겹쳤다. 그래서 실제로 피난은 생명(관리)

4) 위의 책, 860쪽.

5) 위의 책, 860~861쪽.

6) 1950년 7월 계엄선포를 시작으로 이승만 정부와 군은 줄곧 계엄 상태를 유지하며 ‘반국가세력’ 색출에 집중했다. 1950년 10월 말 그리고 1951년 3.4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도 무시하거나 부분적인 지역적 해제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춘수, 「한국전쟁 시기 계엄의 성격」, 『사립』 50권0호, 2014 참고.

7) 이에 대해서는 강성현, 「한국전쟁기 예비검속의 법적 구조와 운용 및 결과」, 『사회와역사』 103권0호, 2014를 참고할 것. 이 연구는 예비검속과 계엄법 그리고 계엄상태 효과를 창출하는 국방경비법 등을 중심으로 학살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인용은 48쪽.

정치와 죽음정치가 항시 맞물릴 가능성을 안은 채 상황 의존적으로 전자가 전면화되어 구현되는 지대인 것이다.

이 생명 관리의 지대에 ‘민간인’이 피난민과 전재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존재했다. 피난과 전재는 전시 구호 정책과 행정이 집중되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피난민과 전재민은 각종 정책과 운용의 부전과 무책임 그리고 실효의 한계를 증명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피난 체험이나 전재 피해에 대한 다양한 기록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관련 연구들 역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피난 및 구호 정책의 실상에 접근해 왔다. 우선 정책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는 피난민 구호와 난민 정착사업에 관한 고찰을 들 수 있다.⁸⁾ 공식적인 피난 정책과는 거리가 먼 피난민의 생활공간을 미시적으로 살펴본 작업 또한 시사적인데 이러한 연구는 기획된 정착촌과는 양상을 달리하는 부산의 피난민 마을의 성격을 규명한다.⁹⁾ 피난민을 군사적 ‘처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다룬 유엔군(미군)과 한국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피난 과정이 곧 죽음의 과정이었음을 밝힌 논문들도 중요한 연구 성과다.¹⁰⁾

한편 전황과 관련하여 피난(민)의 성격의 차이를 밝힌 연구가 있다. 전쟁 발발 직후의 1차 피난과 1.4후퇴 직후의 2차 피난을 각각 “정치적 피난”과 “생존을 위한 피난”으로 구분하여 피난의 계급적, 정치적 속성을 밝힌 논의가 그것이다.¹¹⁾ 피난을 국면에 따라 달리 파악해야 한다는 관점은 이후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점령 그리고 수복에 따른 (지배)국가의 교체가 어떤 맥락에서 피난 주체의 차이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치가 피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분석되었다. 피난에 숨겨진 여러 겹의 주름을 펴보는 미시적인 접근은 전체적으로 피난 내부의 경계들에 대한 관심과 맞닿아 있다. 발발 초기 잔류한 자와 피난한 자의 자기의식과 타자의식에 대한 해석도 특히 문학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문제의식 면에서는 피난의 내부를 본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할 것이다.¹²⁾

나는 기존 연구의 시각과 역사적 판단을 공유하면서, 전시 난민됨의 상황과 의미를 좀 다른 경로로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피난(민)이나 전재(민) 문제는 주로 냉전-열전 국

8) 서만일, 『한국전쟁 초기 민사정책: 부산의 피난민 통제 및 구호 그리고 경제 복구』, 『석당논총』 72권 0호, 2018; 김아람, 한국전쟁기 난민정착사업의 실시와 구호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1, 2017.

9) 차철욱 외,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공간』, 『민족문화논총』 제45집, 2010.

10) 강성현,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피난민 인식과 정책』, 『사립』 33호, 2009; 서희경, 『한국전쟁에서의 인권과 평화: 피난민 문제와 공중폭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권1호, 2012.

11) 김동춘, 앞의 책, 특히 2장 참고.

12) 각 주체의 의식이나 내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학연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점령, 수복, 1.4후퇴 무렵의 서울 잔류자와 피난민의 의식을 중심으로 피난의 정치화 양상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이민영, 『전시의 서울과 피난의 (불)가능성』, 『현대소설연구』 71호, 2018.

가의 정치적 역장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이것이 극히 사회경제적 사태(존재)였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난민됨의 핵심을 박탈에서 비롯된 삶의 취약성으로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난민 혹은 난민됨이라는 용어는 전쟁이 낳은 피난, 잔류, 복귀 등 서로 교섭하는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난민과 전재민을 포괄해서 쓴다.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은 머무른 채 전재민이 되었고, 피난 갔던 사람들은 피난민이 되었다가 폐허가 된 원거주지로 돌아와서는 다시 전재민이 되었다. 살기 위해 떠나고 돌아오는 대규모 원거리-근거리 이동자들이 생겨났고, 잔류하든 떠나든 체류하든 다 ‘머물’ 곳을 필요로 했다. 이들은 ‘집’의 상실과 부재라는 공통의 악조건 속에서 ‘거주’-‘거주’의 불가능성이나 불안에 던져졌다. 거처 공간이 집단적으로 요구되었고, 이 공간 자체를 만들어내고 분배하는 정책 그리고 민간 사회를 포함하여 동요하는 소유 (무)질서의 조절이 불가피했다. 이 점에 관심을 두고, 삶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둘러싸고 피난민·전재민이 맞닥뜨린 사회경제적 동요를 살펴보면 전시 박탈된 존재의 (비)장소성의 곤경을 고찰할 것이다.

2. 소유와 박탈 그리고 전쟁 빈곤 사회

어떤 권리를 가진다는 말은 특정한 효용이나 경험을 누릴 자격을 얻는다는 뜻이며 구체적이고 실물적인 무언가를 누리거나 소유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¹³⁾ 사회권이든 경제권이든 1950년 무렵의 한국에서 다수가 내실 있게 보장받았을 리 없지만 전쟁은 이 권리들을 전면적으로 제한-중단시켰다.¹⁴⁾ 국민의 권리 제한-중단은 전시 계엄 선포로 공식화된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화할 수 있”¹⁵⁾게 되는 것이다. 공공의 안전이 ‘안전’이라는 공적 규범을 규정하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을 초월한 폭력으로 수행되는 사태가 곧 계엄상태¹⁶⁾라는 설명에 기대면 초법적 전시 계엄의 ‘제

13) 스테파니 데구이어, 「권리들을 가질 ‘권리’」, 『권리를 가질 권리』, 스테파니 데구이어 외 저, 김승진 역, 위즈덤하우스, 2018, 33쪽.

14) 헌법의 재산권과 교육 및 복지 관련 사회권 보장은 제헌국회의 대한민국헌법 2장 국민의 권리의무 참조. 원문은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헌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226~228쪽.

15) <계엄법>(1949. 11.24 제정,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한-중단' 명령 앞에서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전쟁과 계엄이라는 중첩되고 배가된 폭력 아래서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민간인에게 여러 절박한 문제를 던져주는데, 이 때 생존과 생활의 물적 토대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은 거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

“실물적인 무언가”를 누릴 가능성의 축소, “소유할 자격”의 상실 내지는 약화, “재산 파괴”의 위험, “거주, 이전”의 변동 등이 말해주듯이, 전쟁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둘러싼 주로 방어적 형상의 사적(私的) 전투를 벌이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전투 아닌 전투는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일 수도, 그 이상의 축적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든 핵심에는 ‘소유’라는 문제가 있다. 냉전적 충돌이었기 때 문에 이념적으로 ‘어디에 소속할 것인가’는 생명 보존에 절대적으로 중대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는 전쟁 일반이 갖는 속성으로서도 결정적인 사안이었다. 전쟁은 기존의 소유 관계나 소유 상태에 동요를 불러일으킨다. 토지개혁이나 재산몰수¹⁷⁾ 같은 국가기구에 의한 제도적 작위가 아니어도, 말 그대로 먹고사는 일의 극단적 곤혹이 전면화되는 전시는 이를 일상에서 실감하게 한다. 김성철이 서울에 잔류할 당시 일기(1950.8.11.)로 남겨놓은 장면을 보자. 그는 임자 없는 보리쌀을 발견하고 고민하다가 “우선 먹어놓고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한다. “난리를 치르는 중에 우리도 차츰 닭달이 되어가는가 싶다”고 쓰면서 다음과 같은 소회를 적어 놓았다.

전쟁과 윤리, 이 둘을 연결하여 생각한 학자는 없었을까. 전쟁은 인간을 변질시키는 것임을 이즈음 절실히 느낀다. 따라서 윤리도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호박밭에 낫은 사람이 들어가서 함부로 호박을 따고 있다. 웬 사람이나 물으니 굶어 죽을 지경이어서 하는 수 없이 들어왔다 한다. 보아하니 얼굴이 누렇게 부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다.¹⁸⁾

직장을 잃고 “세상을 피해 다니며” 겨우 끼니를 이어나간 이 역사학자는 주인 없는 쌀보

16) 도미야마 이치로, 『시작의 앞』, 심정명 역, 문학과지성사, 2020, 107쪽. 그는 계엄상태를 “사법적으로 한정된 듯 보이는 신문(訊問) 영역이 일상 세계로 확대”되는 폭력이 “고개를 드는” 장으로 설명하면서, 신문의 대상이 되버린 자의 ‘말’과 폭력 예감의 문제를 논한다.

17) 소유 체제의 변동은 해방과 더불어 진행된 귀속재산 처리와 토지개혁(론)을 통해 이미 전개되고 있었다. 관련해서는 신동진, 「귀속재산에 대한 토지개혁과 제문제」, 『고려법학』 95권0호, 2019; 황병주, 「해방 공간 한민당의 냉전 자유주의와 사유재산 담론」, 『동북아역사논총』 제59호, 2018 참고. 전시에는 점령과 수복 과정에서 재산몰수 등 기존 소유 질서에 대한 ‘침탈’이 일어났다.

18) 김성철, 『역사 앞에서』, 정병준 해제, 창작과비평, 2016, 175쪽.

리를 취하는 일에 가책을 느끼면서 자신의 “소유권” 주장도 그만두는 생계의 도덕률에 관해 이야기한다. 배타적 소유의 경계는 정황상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 소유 체제나 감각의 동요가 이같은 도덕적 자각으로 이어진 것만은 아니다. 전란을 피해 이동하는 주체에게 소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다. 이들을 통해 전쟁이 개인사적으로도 그간의 소유 체제를 흔들고 소유 자체를 불안에 몰아넣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체를 불안에 빠뜨리는 사회경제적 사건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른바 세속의 물정을 그 어떤 작가보다도 날카롭게 포착한 염상섭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1950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서울의 정황을 그린 『취우』는 부산으로의 원거리 피난을 준비하는 시기의 잔류자들을 묘사하며 ‘적지하’ 생활에 대한 촌촌한 기록을 남겼다.¹⁹⁾ 묘사되는 인물들은 중류층에 속한다. 소설은 이들이 줄곧 연고자들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과정, 즉 근거리 ‘피신’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한 분주한 행보를 세세하게 기록한다. 서울을 벗어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잔류자가 되었지만 인물들이 처한 실제 상황은 피난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의 행보는 애육의 노선을 따르기도 하지만 복잡다단한 인연과 갈등의 선은 말미로 가면서 “누구나 피난민”²⁰⁾이라는, 1950년 겨울을 넘기면서 본격화된 집단 정체성으로 뭉쳐진다.²¹⁾

전쟁 발발 초기 피난의 다급함은 허위 정보를 던지고 일찌감치 수도를 떠나버린 정부의 ‘배반’으로 격화된다. “하룻밤 사이에 국가의 보호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외딴 섬에 갇힌 것 같은 서울 시민은 난리 통에 부모를 잃은 천애고아나 다름없는 신세”²²⁾가 되었다. 서울 시민은 “동족끼리나 아니면 그래도 국제적 체면인 안목이 있으니까 어엿한 포로 취급이라도 받으려만” 그도 못되는 “포로 아닌 포로”²³⁾가 된 상태다. 서울 시민은 “포로” 신세에서 ‘피난민’이 되기 위한 자구책을 스스로 찾아야 했다. 인물들은 계속 단거리 이동을 통해 여

19) 염상섭의 『취우』등을 포함하여 1945~1953년 시기의 문학을 “적산문학”으로 범주화하여 해방에서 한국전쟁기의 소유 체제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사적인 논의로는 테오도르 휴즈, 「염상섭의 적산문학」, 염상섭, 『취우』, 글누림, 2018, 595~606쪽. 이 논문에서 “적산문학”은 일차적으로 일본과 미군정이 남기고 관리하고 입수, 배분한 적산에 대한 표상과 주장을 담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을 가리킨다. 더불어 재현의 수준을 넘어서, 한반도 자체를 누가 소유할 것인가라는 식민성의 문제와 닿아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20) 염상섭, 『취우·새울림·지평선』, 글누림, 2017, 396쪽.

21) 취우 이후 주요 인물들의 부산 피난과 그 곳에서의 생활은 「새울림」과 「지평선」 두 작품으로 서사화되었다. 두 작품은 위의 책 참고.

22) 위의 책, 51쪽.

23) 위의 책, 71~72쪽.

기서 저기로 피해 다니는데 이들의 조급한 왕래는 실상 대문자 피난이 실패한 결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야 하게 된 일일 뿐이다. 무역회사의 전재산을 보스턴백에 넣고 한강 건너 방법을 찾아 헤매던 무역상-모리배-자본가는 결국 “반양제의 으리으리한 저택을 두고 오막살이 아랫방 한 칸”²⁴⁾을 빌리고, 내내 몸에 꼭 붙인 채였던 보스턴백을 풀어 전재산을 허름한 방의 깨진 구들장 속에 숨긴다. 보스턴백은 그에게 죽음이자 삶을 의미한다. “이 보스턴 백이 자기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르니 버릴 수 없는 바에는 끌고 나가야만 할 절박한 사정”²⁵⁾이라는 서술이 인상적으로 짙어내듯이, 재산은 생명을 이어갈 기반이기도 했고 뺏길 계기이기도 했다. ‘많은’ 재산은 더 그랬다. 불행하게는 반동으로 몰릴 이유가 될 것이고, 다행하게는 앞날의 생활의 훼손을 최소화해줄 것이다.

『취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환기시킨다. 첫째, 전시에 주체에게는 정치적 감각과 경제적 감각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만이 결정적인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후자의 경우 소유의 불/가능성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죽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잔류든 피난이든 보다 안정된 제2의 체류나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는 관철되어야 한다. 전시에 소유는 필사적으로 움켜쥐어야 할 조건이지만 또한편으로는 가장 훼손되거나 무화되기 쉬운 조건이다. 물론 그 구현의 정도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결정되었다. 『취우』에 등장하는 종류의 재산이나 자산을 가진 집단은 축소-정착이긴 하나 원거리 피난을 가셔도 상대적으로 척박한 위기에 내몰리지는 않는다. “두 번 피난에 아주 거덜이 났다기로”²⁶⁾ 기아에 시달릴 것도 아니고 처소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시 작은 무역상을 차리기도 하고 다방 경영에 나서기도 하며 재건과 문화를 내건 미공보원의 연회에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챙겨야 할 커다란 보스턴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변변한 재산이라고는 아예 없는 애초 소유에 취약한 층에게 전쟁 및 그 여파로서의 피난은 빈약하고 보잘 것 없는 물적 터전에 더 가혹하게 가중된 불안을 뜻할 뿐이다. 물론 이 층도, 잃을 작고 소박한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도 잃고 만다. 당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그랬지만, 이들은 전시에 터전이나 생계 수단 —장소, 생계, 주거지, 음식, 보호 등—을 빼앗기고 권리를 잃어버리는 즉 터전, 권리, 생계, 욕망, 소속감 등을 강탈당하는 박탈²⁷⁾을 극단적으로 체험한다. 박탈은 근간을 잃어버리고 점령당하고 가정과 사회적 유대가 파괴되는 경험, 신원확인의 억압들, 삶의 위태로움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는 바,²⁸⁾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피난길과

24) 위의 책, 44쪽.

25) 위의 책, 17쪽.

26) 위의 책, 426쪽.

27)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박탈』, 김응산 역, 자음과 모음, 2016, 21~24쪽.

28) 위의 책, 34쪽.

피난지에서의 극한 체험을 비롯하여 한국전쟁이 남긴 거대한 집합 기억과 공통 서사로 축적되어 있다.

6월 25일부터 28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난 고민과 고행을 정부 부재의 황망함과 절망 속에서 기록한 유진오는 「서울탈출기」²⁹⁾에서 “피난민의 한복판”에 끼어 보게 된 사람들의 행색을 “이불뜯개이, 쌀보따리, 조그만 양은술, 냄비쪼가리 등속을 리야카에 싣고 주인이 끌고 아내가 밀고 어린애들이 부축”³⁰⁾한다고 묘사했었다. 이 묘사 뒤로 그는 “부유해 보이는 사람은 거의 눈에 띄이지 않”으며 “소 끌고 나선 농민들, 배낭을 진 도회지 사람들, 보따리를 인 여인네들 통털어 만일 공산주의라는 것이 참으로 인민을 위한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해 주는 것이라 하면 쌍수에 기쁠을 들고 나서서 소위 인민군을 환영해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³¹⁾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탈을 겪으며 더 큰 궁벽함이 대기하고 있는 어딘가로 이동하는 피난민의 ‘소유자’로서의 정체성은 결국 ‘무소유자’라고밖에 할 수 없을 듯하다. 소유자로서의 위축이나 절하 혹은 ‘무소유자’로의 전략은 이 시기 대규모로 일어난 전반적인 경향이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기에 빈곤한 피난자는 피난길과 피난지에서 자신의 이전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연장이자 하락인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비참을 실감하게 된다.

김광주의 「부산으로 가는 길」은 피난이 살고자 가는 길이나 사실상 보잘 것 없는 소유자에서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되고 마는 길임을 말해준다. 그는 전시 피난의 상황을 “民族全體가 모든 所有를 버리고 白紙로 돌아가는” “瞬間”³²⁾이라고 표현했지만 민족이 균질적인 하나가 아님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허구적 가공도가 낮은, 체험에 밀착한 소설로도 번역되어 뚜렷하게 제시되었다. “오막살이나마 제 집을 버리고 두 번째”로 “달아나”는 길에 인물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남쪽으로 달리는 “백대 천대 튼력들”과 “천대 만대 째차들”이 전시하는 “단지 돈과 권력과 세력과 지위만이 말할 수 있는, 서로 잡아먹을 것 같이 무서운 세상”³³⁾이다. 부산에서 김광주는 “家庭과 生活과 一切의 所有를

29) 이 글에 나타난 유진오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도강과, 잔류과, 지하잠적과 지형 내에서 검토하는 논문으로는 서동수, 「한국전쟁기 유진오의 글쓰기와 피난의 윤리성」, 『우리말글』 52, 2011 참고.

30) 유진오, 「서울탈출기」, 『고난의 90일』, 수도문화사, 1950, 41쪽. (원문은 『한국전쟁기 문학/수기/제도 자료집』 8, 영인본, 2009)

31) 위의 글, 42~43쪽.

32) 김광주, 『지구의 비극』, 수도문화사, 1951, 22쪽. (원문은 『한국전쟁기 문학/수기/제도 자료집』 8, 영인본, 2009)

33) 김광주, 「이단」, 『피난민은 서글프다』, 수도문화사, 1951, 35~36쪽. (원문은 『한국전쟁기 문학/수기/제도 자료집』 8, 영인본, 2009)

버리고 遊離乞食, 男負女戴 갈광질광”³⁴⁾ 하는 피난 빈곤의 전형적인 상태에 빠진다. “방이 있어야겠다”는 절박함에 “쟁가비를 길고 밥을 끓여먹을 만한 依支할 곳”³⁵⁾을 찾아 헤매지만 “하꼬방같은 바라크 다다미 위”만이 잠시 주어졌을 뿐이고 헤어진 가족은 여관에 수용된다. 하지만 바라크의 한 칸마저도 그는 곧 잃게 된다.

나는 걸음을 재촉하여 M극장 뒤 바라크로 돌아왔다. 그러나 여기서도 뜻하지 않은 青天벽력이 내리는 것이었다. 이 밤중에 거처를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 그것 때문에 잠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확실히 잔인한 일이지만 과실은 이편에 있으니 별수 있으랴! (.....) 우리 민족은 무슨 기구한 운명 때문에 내땅 내고장 내집을 다 집어던지고 내하를 밑에서 잠자리를 잃고 집없는 개모양 헤매어야 하는고.³⁶⁾

전쟁 발발 후 1차 피난 당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조사나³⁷⁾ 대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간의 연구들이 공통되게 밝힌 바다. 초기 1차 피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황 정보의 부재로 인한 상황 판단의 불능, 생활 유지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서울에 잔류했다. 그러나 1950년 겨울 무렵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피난민의 규모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1차 피난의 경우는 약 100~150만명 사이로 추정되는 데 비해³⁸⁾ 2차 피난은 480만명으로 추정된다.³⁹⁾ 삶의 터전을 떠난 거대한 무리의 발생과 피난 빈곤의 현실이 이 때 본격화되었다.⁴⁰⁾ 1951년에 출간된 『피난민은 서글프다』는 “오직 살아나야겠다는一念에서 당황히 南쪽으로 흘러온 피난민 신세 一모든 것이 不備한 셋방살이 數朔에 衣, 食, 住는 나

34) 위의 책, 18쪽.

35) 위의 책, 27쪽.

36) 위의 책, 50쪽.

37) 통계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1950년 10월이며 전황이 악화된 12월 무렵에는 다시 중단된다. 1951년 3월 서울 재수복과 7월 전선 안정되고 1951년 중순 이후에 후방지역에서 조사가 실시된다. 전쟁 피해 조사의 전개는 공준환,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해 조사의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참고.

38) 1차 피난기에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난민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당시의 발표들과 자료들을 통해 기존 연구들은 100~15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지에 그대로 잔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잔류자 수를 알려주는 자료 역시 많지 않다.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과 논의는 위의 글, 69~75쪽.

39) 서만일, 앞의 글, 271쪽.

40) 부산의 피난민 수용(생산공장, 창고, 극장 등)과 노숙 등 생활고에 관한 생생한 기록은 부산일보사 기획연구실, 『임시수도천일』(하), 부산일보사, 1984, 특히 제6화 참고.

날이 窮迫해질 뿐”⁴¹⁾이라고 하면서 박탈의 정서를 토로했다.⁴²⁾

생계와 삶의 과정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활동을 한나 아렌트는 ‘사회’의 영역으로 묶어 두었다. 사회란 조예의 필연성이 공적으로 대두한 영역이고 이를 향한 몰입이 지배적이 되는 영역인 것이다.⁴³⁾ 사회·사회적인 것을 정치·정치적인 것과 차별화하여 ‘질적’으로 아래에 둔 아렌트의 이론적 배치 자체는 비판적으로 유보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⁴⁴⁾, 전쟁 빈곤의 상황이 대다수의 주체를 생존과 생계의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하도록 하는 사회를 형성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전쟁 빈곤 사회의 실상은 너무나 현저하고 긴박해서, 폴라니의 표현을 빌자면 전시 통치권에 의해 분명하게 “발견”되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처리를 위한 개입이 시급한 상황으로 인지되었다. 그렇다면 관여와 개입의 양상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사회는 보호되었을까? 다음 절에서는 사회경제적 박탈의 발견이 어떤 공적 정책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집과 수용소 등 물리적 공간을 둘러싼 법제 및 행정의 동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 수용소 혹은 가옥을 둘러싼 정책과 그 한계

전쟁 발발 초기부터, 이동하고 재이동하는 수많은 피난자들과 전재민들이 삶의 장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피난과 전재는 대다수의 민간인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보편적인 형태의 피해였다.⁴⁵⁾ 개전 초반부터 시작된 미군의 무차별 대량 폭격으로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는 어마어마했다.⁴⁶⁾ 피난민이건 전재민이건, 민간인은 마을 혹은 지역의 붕괴와

41) 김광주·조연현·한무숙, 『피난민은 서글프다』, 수도문화사, 1951, 〈序〉. (『한국전쟁기 문학/수기/제도 자료집』8)

42) 물론 피난민의 ‘국민됨의 도리’나 ‘애국심’을 논하는 필자도 있다. 조연현, 「해바라기의 생리」, 위의 책; 이무영, 「피난민의 권리」, 김 송 편, 『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원문은 『한국전쟁기 문학/수기/제도 자료집』1)

43)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외 역, 한길사, 2010, 특히 2장. 이러한 인식론적 틀은 프랑스 혁명과 미국혁명을 비교하면서 “행복(풍요)”과 “자유”를 차이화한 혁명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해서는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성표 역, 한길사, 2007, 특히 2장 참고.

44) ‘사회’ 개념 형성의 계보와 아렌트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치노카와 야스타카, 『사회』, 강광문 역, 푸른역사, 2015, 특히 2장 참고.

45) 이를 각각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 범주화한 것으로 공준환, 앞의 글 참고.

46) 서울과 지방에 가한 공중폭력과 그로 인한 인명, 도시, 지역 파괴에 관해서는 김태우, 『폭격』, 창작

함께 사적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 도시와 지역의 파괴는 더 미시적이고 실질적인 ‘가옥’의 파괴를 안고 있다.⁴⁷⁾ 내면이나 관계를 포함하여 와해라는 것의 다층성과 다면성을 생각할 때⁴⁸⁾, 집의 파괴란 주체에게 일어나는 가장 물리적이고 직접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일 것이다. 집을 잃은 자를 대상으로 국가는 법제와 행정을 가동하고 있었다. 이 시기 생명 관리 통치의 일면을 보여주는 각종 정책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했을까. 이 질문은 전시 국가가 전시의 사회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리고 발견과 더불어 어떤 운동을 시작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한 것이다. 사회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구성원들을 본다는 의미이고 도저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실상을 감지한다는 의미다. 이 때가 전시 사회에 응하는 통치의 스위치가 켜지는 때다.

전시 생명 관리 정책은 움직이고는 있었으나, 무척이나 척박해 보인다. 국가는 생명 보호책을 생산하는 주된 기구였다. 하지만 국가가 엄연히 전쟁 상태로 ‘엄존’하고 사회가 난민을 체질로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수립과 운용의 한계는 뚜렷했다. 전시 구조의 특성상 피동치 집단에 대한 국가 지배력은 압도적으로 커지고 국민 대다수는 피난민이나 전제민 또는 민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전쟁 통치에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역사가 증명하듯, 이는 사람들이 국가에 ‘의지’했다거나 원하는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생명의 보호와 관리를 의도하는 공적 조치에서, 머물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 피난민과 전제민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것은 긴급하고 중대한 임무였다. 이동 집단은 소지 불가능한 집을, 떠남의 형식으로 가장 먼저 버려두거나 포기해야 한다. 이들을 다시 원래의 주거자나 거주자로 ‘갱생’시키는 기획은 용이하지 않았다. 대부분 ‘수용되는 자’가 되어야 했지만 시설의 부족으로 그마저도 되기 어려웠고 이후 귀환했다 해도 들어가 살 집이 없었다.

피난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 7월 군 민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다. 민사부는 민간인의 철수, 복귀, 피난민 구호 관련 임무를 담당했다. 7월 10일의 통첩은 남하 피난민이 연일 급증하여 대다수가 대전에 운집한 상태임을 알리면서 피난민 분산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부에 통지한다. 통첩에는 사회부, 농림부, 국방부, 내무부, 교통부, 보건부가 각각 피난민 수용소의 설치와 등록증 교부, 양곡 확충, 피난민 조사 등록, 피난민

과비평, 2013, 특히 9장 참조.

47) 대한민국통계연감 1952년 자료의 <6.25동란피해> 절에 따르면 가옥파괴는 1952년 3월 현재, 일반주택 총수 3,283,529 중 전소전파가 414,825, 반소반파가 100,120 (325쪽) 그리고 귀속재산 중 주택파괴는 총수 84,058 가운데 59910이 파괴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321쪽) 1952년도 대한민국통계연감 원본은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48) 관련하여 한국전쟁의 폭력성을 유대와 친밀성의 파괴에서 찾은 권헌익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헌익, 『전쟁과 가족』, 정소영 역, 창작과비평, 2020 참고.

이동과 치료 영역을 맡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부의 업무로는 “피난민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피난민 수용소를 화급 설치할 것”을 시작으로 피난민 증명서 교부, 인솔, 수용, 급식 등이 이어진다. 특히 수용에 대해서는 피난민 증명서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사상온건 여부를 항상 심사 감시”⁴⁹⁾할 것이 제시되어 있다. 피난민은 일찌감치 구호의 대상이자 감시의 대상으로 양가적인 존재였다.⁵⁰⁾

피난민 수용 조치가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법제화된 시점은 1950년 8월이었다. 수용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닥쳐오자 정부는 귀속재산 건물 개방을 결정한다. 사회부장관이 “귀속재산 중 주택, 여관, 요정(料亭), 기타 수용에 적당한 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피난민의 인원과 피난기일을 지정하여 수용을 명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관리인이 피난민에게 임대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 영업상 지장이 있는 귀속재산의 관리인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경감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을 기피 또는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⁵¹⁾ 9월 25일, 임시조치법은 수용 시설의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이를 위해, 피난민 수용이 귀속재산만으로 충족되지 못 할 경우에 사회부 장관은 귀속재산 이외의 주택, 여관, 요정 기타 수용소에 대해서도 피난민의 수용을 명령할 수 있다⁵²⁾는 조항이 추가되었다.⁵³⁾

“가옥 파상”에 따른 전재민의 처소-없음도 당연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⁵⁴⁾ 1950년 겨울 전황이 악화되면서 주택의 파괴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고, 1951년 6월부터는 피난민의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주택난이 더해졌다. 1951년 7월초부터 1952년 6월까지의 자

49) 「사회, 농림, 국방, 내무, 교통, 보건부장관으로부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각 지사에게, 『한국전란1년지』(1950-1951),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1951, C49쪽.

50) 강성현, 앞의 글, 116쪽. 유엔군(미군)은 피난민을 원주민과도 다른 “추방된 자들”로 파악했고 이를 전제로 군사적 필요에 따라 무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다.

51) 법률 제145호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chronology/archiveDetail.do?flag=1&page=9&evntId=0049286408&sort=year>

52) 법률 제146호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 법률」, 『한국전란1년지』(1950-1951),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1951, C61.

53) 1951년의 <정부의 피난민 구호 대책 기본 요령>에 의하면 1951년 2월 10일 현재 피난민 총수는 4,890,369명이고 이 가운데 집단 수용자는 1,237,820명이다. 구호대상은 노약, 자력으로 생계유지불능자를 우선한다는 원칙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전란1년지』(1950-1951),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1951, C61와 D32쪽. 각도별 주별 피난민 동태 통계 및 구호 상황 통계들은 D33~D38쪽 참고.

54) 1950년 10월 25일 현재 주택피해 상황 통계는 「주택피해상황」, 『한국전란1년지』(1950-1951), D14-D15쪽 참고. 원인은 공습, 총포, 화재, 기타로 나뉘어 있다.

료를 바탕으로 한 국내정세 보고 문건에는, 전재민이 8백만으로 추산되며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범람하는 이들을 구호한다는 것은 “극난”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60만호에 달하는 가옥이 파괴되었고, 7140호의 후생주택이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시수용소를 각 요소에 설치하고 지방 소개와 도시의 주택 관계를 조사하여 배치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어가는 것은 판자집과 무허가 주택이었다.⁵⁵⁾ “일언”하여 “비극적”이라 할 밖에 없다고 표현된 “국민의 생활 상태” 해결은 “원래가 빈약한 국가의 경제력으로서”는 도저히 미급(未及)”하다는 진단으로 이어졌다.

수용시설이나 주택 공급 대책의 지남함은 이 시기의 각종 자료나 통계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제6차 국제연합정기총회에 제출한 UN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보고서(1951.9.5.)를 살펴보자. UN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1950년 10월 7일 유엔 제5회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 제376호에 의거하여 구성되었다. 창립일부터 1951년 9월 5일까지의 업무를 수록한 이 장문의 보고서 가운데 〈피난민과 민간인 구호〉 부분은 “1950년에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군의 침범을 받게 된 직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9월 말에 이르자 부산 대구 마산 지대에만도 360,000 이상의 피난민으로 차버렸었다. 그러나 본위원단이 11월달에 한국에 도착되었을 때에는 이들 피난민 대부분이 이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폐허가 된 고향에 남아 있는 옛날 집터 위에 임시적인 뼈라들들 짓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중공군의 대공세가 있을 때는 때마침 흑한이 습래(襲來)하는 엄동인데 피난민의 다수는 수다의 여러 백만 명으로 산(算)하게” 된 사정과 “민국 총인구의 근 20%가 집을 떠나 도망해 남하하였고 북한으로부터서도 길이 메이게 피난민이 내려오”던 상황을 언급한다.⁵⁶⁾

곳곳에 “뼈라”와 “하꼬방”이 넘쳐나고 여기에 잔혹한 강제철거의 폭력이 행사되는 것이 또다른 현실이었지만⁵⁷⁾ 어쨌든 가옥-수용소(사설수용소와 공설수용소)⁵⁸⁾라는 공간 생성

55) 「개설-국내정세」, 『한국전란2년지』(1951~1952),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전사편찬회, 1953, C48쪽.

56) 이 보고서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피난민 통계표”를 신고 있는데 통계숫자가 실숫자보다 훨씬 적은 것이며, 지난 6개월 동안 다수의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으므로 이 통계수치가 1950년 말부터 1951년 초 사이에 생긴 피난민 통계를 그대로 표시한다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를 단다. 1951년 8월 31일 현재 서울 및 전국 피난민 수를 알려주는데 총수는 3,689,000로 집계되어 있다. 『한국전란2년지』(1951~1952),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전사편찬회, 1953, C400쪽.

57) 국회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정부와 경찰 권력을 향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다. 제14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1952.12.3) 13~19쪽 참고. 토의 안건 가운데 〈무허가건축물 강제철거 중지에 관한 건의안〉 참고. 속기록은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

58) 전재민이나 피난민 통계 관련해서는 〈전(全)전재민 통계표〉(1950.6.25.~1952.3.15): 〈전제지별 남

행정을 통해 생명관리 정책은 그 좁디 좁은 길을 내고 있는 중이었다. 이 길이 ‘살아도 되는 집단’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난 것이라면, 점령과 탈환이라는 정치적 환경의 동요 사이에서 경제적 기회를 노리는 사적 기도를 제어하려는 정책도 마련되고 있었다. 1950년 10월 1일, <탈환지구 국가재산 조치에 관한 포고>(1950.10.1.)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조치는 “희생된 생명은 다시 살릴 길이 없으나 파괴된 재산을 다시 부흥시켜 전후 복구를 조속히 완수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행정혼란기를 이용하여 국법과 도의 및 안녕질서를 망각하고 생업 기업체, 주택 등 재산에 이욕심 탐내어 불법 점유 파괴등 행위를 자행(恣行)하는 경우” “극형에 처할” 것임을 고했다. 이는 1948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받아 귀속재산처리법(1949.12.19.)⁵⁹⁾에 의거해 관리해온 귀속재산을 혼란으로부터 보호, 유지할 것임을 고지한 것으로⁶⁰⁾ 국유-공유 재산의 사적 탈취를 막고 경제적 질서를 잡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처벌 대상이 되는 세 번째 경우로, “공산도배 또는 반정부적 행위가 현저한 자의 점유재산이라도 소속청에 합법적 수단을 취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유 또는 파괴를 감행한 자”라는 적시다. 이것은 당시 역산(逆産)이라 불렀던, 정치적 경위의 경제적 실물 유산과 연관되어 있다. 역산은 “피뢰군이 서울을 도주한 후 공산도당에게 부역행위를 한 부역자”의 재산을 말한다.⁶¹⁾ 해방 후 일본인이 남긴 재산을 일컫는 ‘적산’과 달리 ‘역산’은⁶²⁾ 점령이 남긴, 경제화된 정치적 산물이자 정치화된 경제재라 할 수 있다. 적산은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⁶³⁾을 지칭한다. 적산(= 귀속재산)이 “일국이 적국을 점령할 때 점령지대 안에 소재하고 있는 적국민과 적국 소유

한피난민 통계표>(1950.6.25.~1952.3.15): <전재민 거주상황별 통계표>(1952년 3월 15일 현재)등 참고. 모두 『한국전란2년지』(1951~1952),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전사편찬회, 1953, D21-D24쪽.
59) <귀속재산처리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5121&ancYd=19491219&ancNo=00074&efYd=194912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60) 처벌 대상은 “서울 인천지방 등을 위시한, 피뢰군에 의하여 피탈되었던 지역내에 소재한 귀속기업체, 귀속주택 등 국가 재산에 대하여 불법점유 또는 파괴행위를 자행하는 자, 권력기관, 단체 또는 차등기관에 소속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권력을 빙자하여 점유 또는 파괴하는 자” 등이다. <탈환지구 국가재산 조치에 관하여 계엄사령관 포고>, 『한국전쟁1년지』, 1951, C15쪽 참고.

61) 『동아일보』, 1950.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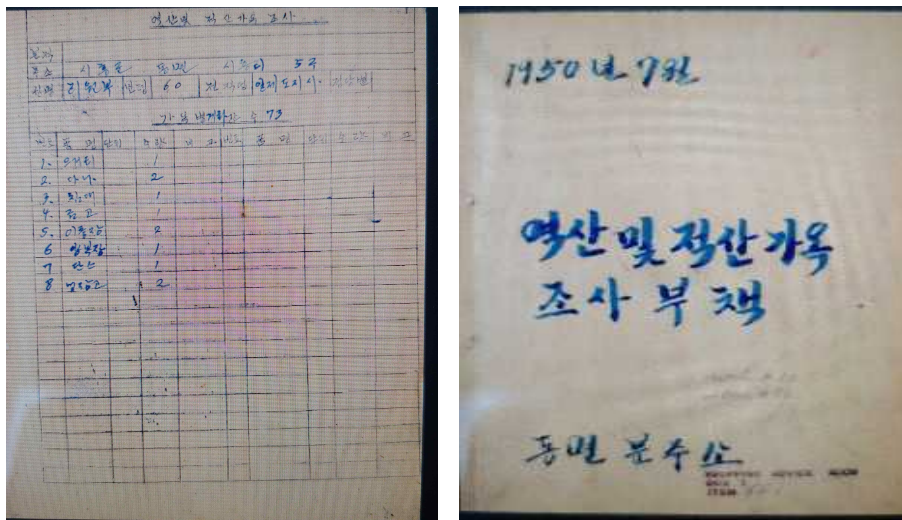
62) 당시에도 “역산과 적산을 혼동하는 일이 있는데 귀속재산은 일체의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며 역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법령이 제정 되는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1950.10.30.

63) <귀속재산처리법>, 1949.

재산”을 칭하는 국제법 용어⁶⁴⁾인데 비해, ‘역산’은 ‘부역’과 연관된 정황적이고 행정적이며 자의적인 용어이자 범주였다.⁶⁵⁾

1950년 11월 무렵, “부역자의 역산 처리에 대하여 연구 중”이라 밝힌 계엄사령부는 국회에서 역산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⁶⁶⁾ 취할 임시조치를 동산(動産)에 한정하여 발표했다.⁶⁷⁾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같이 역산처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림 1〉 1950.7. 역산 및 적산 가옥 조사부책, 동면 분주소(시흥군 동면)⁶⁸⁾



- 64) 이현주, 「해방 직후 적산처리 논쟁과 대일배상 요구의 출발」, 『한국근현대사연구』 72집, 2015, 212쪽.
- 65) 전자화된 문헌 자료 조사 결과, 관련 자료는 양적으로 많이 없다. 지역 행정 자료가 간헐적으로 보이는데, 이보다는 당시 신문 매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한다. 역산에 대한 별도의 연구나 본격적인 논의는 전무하다. 당시 부역자 처벌 양상을 살피면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한 것으로는 김동춘, 앞의 책, 167쪽.
- 66) 국회속기록에서 확인 가능한 역산 관련 발언은 부역 기준, 군경이나 청년단체원들의 행태 등에 대해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 67) 『동아일보』, 1950.11.11. “부역행위로써 또는 도주하여 역산관리에 곤란한 역산 중 동산에 대하여는 그 관리를 시 군에 일임하여 보관케 하고 그 중 부패물 또는 계절물(농작물 등속)은 시, 군에서 환가처분하여 특별회계로 보관케 한다. 그리고 역산 한도 내에서 부역자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한다”가 그 내용이다.
- 68) 자료는 국가전자도서관 <http://viewer.nl.go.kr:8080/main.wviewer>

1954년의 자료에 따르면 역산은 법적으로는 민법 제25조 <부채자의 재산 관리>에 의거하여 판단,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⁶⁹⁾ 역산이 법적으로 미비하며 ‘미달’하는 범주였다는 점도 당시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52년 “역산 문제에 관하여서는 법적으로 역산이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요는 민족의 정기를 살리는 뜻에서 부역자 재산을 역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⁷⁰⁾는 관재청장 유완창의 언급이 말해주는 바, 역산은 애매하면서도 실정적인 것이었고, 경제적이면서도 이데올로기적인 것이었다.

위의 <탈환지구 국가재산 조치에 관한 포고>의 3항은 역산의 불법적 강탈, 탈취 행위에 대한 방지와 처벌에 해당한다. 그러나 역산에 대한 불법 점거나 취득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역산 자체를 결정하고 ‘생산’하는 구조 자체를 가리고 있다. 질서를 복구하고 경제 범죄의 불법성을 강하게 규제한다는 논리는 ‘빼앗아도 되는 인간’을 정하여 실행하는 폭력적 침묵의 외피인 것이다. 이 점은 국회에서 정확히 지적되었다.

소위 역산이라고 해가지고 부역행위를 한 사람의 가옥 혹은 기타 재산을 차압을 하고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해서 식량도 주지 안이하고 또 농량미 같은 것도 전부 차압을 해놓는 또는 심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족을 축출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리하나 재산을 소위 역산이라고 해가지고 또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자위대니 이러한 간부 사람들이 그 가옥을 들고 재산을 상당히 이것이 불법으로 처리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역행위를 한 사람의 가족의 추방문제 또는 그 자들의 재산의 차압 문제 즉 역산 문제 이런 것은 과거 공비들이 3개월간 감행하였던 그 방법과 그 정신이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법적인 행동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백주에 공공연히 단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적에 우리로서는 하로바빠 이 모든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통감했습니다. ⁷¹⁾

의원들이 단지 역산의 불법처리가 문제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부역행위자라는 고리를 거는 구조와 부역행위자로 호명된 자에게 가하는 탈취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들은 “강제로 끌려나간 가족 한 사람만 있어도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불법하게 역도 공산당

69) 「역산관리에 관한 건」, 강원도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54. 원문은 국가전자도서관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Up.do?select__search__box=1&upside__query=%EC%97%AD%EC%82%B0#none

70) 『조선일보』, 1952.8.16.

71) 박제환 의원의 발언이다. 제8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1950.10.31. 7~8쪽. 원문은 <http://likms.assembly.go.kr/record/>

에 못지 않은 잔악한 일로서 몰수하는 일”⁷²⁾ 이라 비판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몇 조인지는 모르겠”으나 “덮어놓고 이적행위를 했다고 해서 군인들이 집을 뺏은 까닭에 민심이 펍 공포를 느끼고 있”는 현실을 목소리 높여 지적했다.⁷³⁾ 같은 장면을 김성철은 이렇게 적었다.

한 순경이 집을 좀 날라달라 하므로 어느 영이라 거역할 길이 없어서 끄는대로 따라갔더니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실심한 듯이 한숨만 짓고 앉아 있는 그 집 여인을 얼려서 ‘너희는 빨갱이니 의복이면 금침이며 살림을 모두 꾸러서 내놓아야 한다’하고 가재도구를 내어 실어서 성북동에 있는 자기가 점거해 놓은 집으로 옮아가곤 (.....) 어떤 경관이 그 집을 점거하고 가산을 전부 차압하여 그대로 점유사용하고 그러고는 이웃에 성언하여 가로되 “신모는 빨갱이니 다시 오면 잡아 죽인다”고. 억울하게 집과 가산을 잃고 빨갱이란 누명까지 쓰게 되었으니 돌아오면 그 심경이 어떠하리.⁷⁴⁾

“수복 후 서울”은 “폐자의 전리품을 사적인 소유물로 만들려는 야만적인 부족전쟁의 현장”⁷⁵⁾이었다. 특히 (역산) 가옥은 이같은 몰법적 이해관계가 노출되고 몰려드는 공간이 되었다. ‘부역’을 이유로 자행된 개인 재산과 안전의 탈취는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횡행으로 이루어져 그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는 데 복무했다. 국회에서의 논의나 관련 기사들 그리고 김성철의 언급이 알려주듯이 역산을 즐기고 누린 세력은 주로 군경이었다.⁷⁶⁾ 경찰국장은 역산가옥에 입주하는 자 중에 경관 수가 계속 늘어간다는 비난이 있으므로 전재민이나 군인에게 양보하고 원칙적으로 역산에 입주하지 말라는 내용의 훈시를 내리기도 했다.⁷⁷⁾ 귀속재산이든 사유재산이든 부역자 재산을 역산으로 몰아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 접수하고 그 가족을 내쫓는 일이 빈번하다는 비판이나⁷⁸⁾ 몇몇 보도된 사례들을 보면 역산은 주로 치안권력이 약탈자가 되어 행사하는 재산 강탈로, 주인 없이 비어버린 공간을 잡아채는 사냥과 포획이었다.

1950년 12월 초 사형금지법이 제정 시행된 것은 이런 상황에서였다.⁷⁹⁾ 역산의 현황이나

72) 제8회 39호 국회임시회의속기록, 1950.10.31., 4쪽. 조광섭 의원 발언.

73) 제8회 40호 국회임시회의속기록, 1950.11.1., 16쪽. 박영출 의원 발언.

74) 김성철, 앞의 책, 260쪽.

75) 김동춘, 앞의 책, 167쪽.

76) 한 기사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준다. 서울시 관재국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행된 임시 입주증 수효가 시내 전지역에 걸쳐 180건인데, 귀속일반가옥 불하 수는 46건이다. 그런데 임시 입주증을 받은 수효중 군인 층이 수위(首位)를 점하고 있다. 『자유신문』 1952.2.23.

77) 『동아일보』, 1950.10.2.

78) 『조선일보』, 1954.12.9.

역학 또는 관련조치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은 자료들이 산포되어 있는 데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치 않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흔적들이 전무한 것은 아닌데 주로 신문기사를 통해 그 추이를 따라가 볼 수 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1951년 9월 사회부 주택과는 ‘부역자’의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 역산이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종전에 역산이라는 명칭을 달았던 가옥도 가능한 한 피난민들을 위해 개방⁸⁰⁾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또 1953년 8월에는, 시민의 복귀와 더불어 역산 구별이 불분명해지고 분규도 자주 발생하여 불하사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⁸¹⁾

그러나 “이북으로 납치되어 간 사람, 피난 나간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의 주택을 부역자의 역산이라고 규정하여 불법소유하고 있는 예가 일반시민보다 고급 공무원 가운데 없지 않”⁸²⁾다는 1953년 여름 무렵의 현실이 말해주듯, 불법 점유나 착복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 수용소와 가옥을 중심으로 전시 국가가 행하는 생명 관리 통치의 사회경제적 실재를 검토해 보면 생명을 관리하는 몇몇 법제는 박탈된 무리에 가당기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너무나 무력했고 물리적 공간의 공급과 분배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정치적 이유를 내세운 사적인 약탈경제가 방기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제약의 법적 조건들을 고안했다 하더라도 작용은 미약했고 그래서 폭력적 탈취의 돌출은 충분히 허용되었던 것이다.

4. 사회의 파상(破狀)과 작은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상상

방법론적 차원에서든 해석적 차원에서든 현실 반영적 차원에서든 전시 국가를 생명 관리 통치의 기구로 파악한다면, 국가와 연동하며 공재하는 사회를 관계론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된다. 전시의 사회는 전쟁 국가의 억압적 내치력에 강하게 장악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각종 구호·보호책의 현저한 미비와 포괄 역량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사회는 살아남

79) 사형금지법(1950.12.1. 제정,시행)에서 사형은 “역도 또는 부역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이유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 수속 또는 재판을 경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침해를 가함”으로 법적으로 규정된다. 사형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군인, 경찰관, 청년방위대원, 자위대원 등 군사 및 치안 임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인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80) 『조선일보』, 1951.9.1.

81) 『조선일보』, 1953.8.2.

82) 『동아일보』, 1953.8.24.

기 위한 나름의 삶의 아비투스⁸³⁾를 계발하고 취하게 된다. 그 특성이나 경향성은 여러 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로서 공통적인 것을 상상하거나 지향하는 가능성 자체가 위축되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통적인 것은 공공성의 문제와 닿아 있다. 공공성을 하나의 공동체 혹은 사회를 위해 절박한 문제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로 규정⁸³⁾한다면 전시 사회는 그 가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꼭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는 “피난사회”라는 김동춘의 진단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쟁 경험 이 축적, 재생산되면서 존속된 피난사회란 “모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모두가 피난지에서 만난 사람처럼 서로를 대하며, 권력자와 민중들 모두 어떤 질서와 규칙 속에 살아가기 보다는 당장의 이익 추구하고 목숨 보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⁸⁴⁾는 사회다. 이 속성들 가운데 특히 세 번째의 “이익 추구” 성향은 박탈된 집단이 이익추구 집단에 의해 공백해지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이익추구 욕망과 이익추구 능력이 현저하게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유통될 때, 그 사회에서 공동체 혹은 공통된 지향의 여지는 방해받거나 오염되기 마련이다. 이에 더해 욕망과 능력이 나름의 공적 조율 기제를 벗어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해 조율의 공적 기제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태라면,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틀에서 전시 민간 사회의 내면을 잠시 살펴보려 한다.

수복 후 이승만은 “동사지경에 빠진 동포들을 살게 하기에는 거처할 처소가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하면서 “정부관공리부터 방한간이나 혹은 한두 사람 거처할 자리만 있을지라도 채워서 빈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적산가옥에 든 사람들은 더욱이 거처 없는 사람을 청해서 같이 살게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거주권까지 물리해서 공심 가진 사람들에게 맡겨서 빈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⁸⁵⁾ 이 발언은 국가의 정책들이 전시 비참의 상황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용과 공서의 책임이 사회로도 넘어오는 구도를 잘 보여준다. 앞 절에서 언급한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정도 마찬가지로 ‘이월’의 경로를 보여준다. 이 조치는 국유인 귀속건물들에서 귀속재산 이외의 건물들로 개방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역시 민간 사회로 동참 요구가 흘러 들어오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회에 책임 분담을 요구하면서 이승만은 “공심”을 거론한다. “공심가진 사람”이 많다면 사정은 그나마 낫겠지만 아니라면 분담은 구현되기 어렵다. 더구나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피난민이나 전재민인 상황이라면, 아무리 동족애를 부르짖는다 해도⁸⁶⁾ “공심가진

83) 윤해동, 「식민지근대와 공공성」, 『사이』 8권 0호, 2010, 171~173쪽.

84) 김동춘, 앞의 책, 65쪽.

85) 『이대통령 공보문』(1950. 10. 2), 『한국전란1년지』(1950-1951),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1951, C15-C16쪽.

86) 주택난과 동족애의 호소는 해방기에도 귀환자를 둘러싸고 그대로 나타났다. 해방기 상황에 대해서

사람”을 어디서 얼마나 찾아 기댈 수 있을지 난감해진다.

전쟁이라는 총체적인 붕괴의 구도에서 생각해볼 때, 박탈된 채 떠돌아야 했던 빈곤자들이 주거지를 떠나서든 다시 돌아와서든 처소를 구하는 데 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현상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회에서도 ‘모리’의 욕망이 작용하고 사익의 욕망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악덕가주”, “주택모리배”, “악덕 적산임대주”, “이적 악덕가주”라 불린 부동산 소유자들의 행태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귀속재산을 부정 매매하여 엄청난 방세를 요구하거나 피난민이 입주한 방세를 올렸다. 또 2층짜리 문화주택 적산가옥에 살면서 작은 적산가옥도 탐내곤 했다.⁸⁷⁾ 이 집단은 “가난한 셋방살이 피난민을 올리는”⁸⁸⁾ “사회악”으로 공론화되었다. “광하를 독차지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한 간 방을 고난의 동포에게 빌리는 것을 실행”하고 “일편의 성의를 표시하기는 고사하고 피난동포의 주택난을 이용하여 방세를 올리기에 급급하는 악덕가주만이 발호하는” 상황을 비판한 『동아일보』의 한 기사는 “심지어는 거액을 들여 고급요정을 꾸미기 위하여 들어있던 피난동포를 축출하는 귀속가옥의 관리인도 있”다고 전하면서 이런 행태에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⁸⁹⁾

‘가난한 셋방살이’의 경우와는 결이 좀 다르지만, 역산가옥 처리 역시 입주자와 연고자 사이에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런 갈등은 1953년 정부 환도와 함께 원주지 복귀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심해졌다.⁹⁰⁾ 1953년 7월 17일 현재 역산처리 관련 소청 사건만 120여건에 달하는 현실을 두고 “추잡하고도 격렬한 쟁탈전”이라는 비난 섞인 표현도 등장했다. 역산가옥을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피난 떠난 사이 누군가 살던 적산가옥을 역산가옥으로 취급해 누군가 입주한 후, 돌아온 원거주자의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⁹¹⁾ 역산가옥이나 귀속재산가옥 침탈과 관련된 민원 진정서가 쇄도한다는 보도⁹²⁾도 같은 상황을 말해주는데, 이 법적 분쟁은 돌아가 살아야 할 곳과 지켜야 할 것이 강탈되고 침해될 때의 황망함과 피로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척박함과 전시 사회의 파상을 떠올려 보면, 가진 것을 잃은 존재는 이곳 저곳에

는 이연식, 「해방 직후 서울 소재 ‘적산요정’ 개방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1946~1947년 제1·2차 개방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84호, 2013.

87) 『경향신문』, 1950.1.16.

88) 『동아일보』, 1951.5.25.

89) 『동아일보』, 1951.11.3.

90) 『민주신보』, 1953.7.5.

91) 『서울신문』, 1953.7.17.

92) 『경향신문』, 1953.10.16.

서 떠돌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서 떠돌고 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들이 상실한 '가진 것'이란 무엇이었을까. 일반적으로 '갖는다'는 동태나 '갖고 있다'는 상태는 목적어를 수반하고 그 자리에는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다. 권리도 그 하나다. 그러나 권리를 갖는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공동의 세계를 준비하고 창출하며 유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의미다.⁹³⁾ 박탈된 사람들은 절박하게는 필수불가결한 물적 지반을 잃었고 그럼으로써 권리도 잃었다. 전시 국가는 박탈을 제어하지 않았고 제어할 수도 없었다. 전시 사회 역시 무엇인가를 나눠 질 만큼 계발되지 않았고 계발될 수도 없었다. 박탈됨을 견디며 생계를 꾸리는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어떤 공감이나 동정의 교환이 일어났는지 혹은 때로 드물게 진정이나 법적 분쟁을 통해 '자신의 처소'를 되찾을 의지를 표명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어떤 권리가 복구된 것인지는, 보다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 전쟁 연구에서 작은 사회적 공공성을 상상하거나 발견하는 데 '함께 살아남음'의 구체적인 경험을 말하는 언어들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93) 라이다 맥스웰, 「권리들을 '가질' 권리」, 스테파니 데구이어, 앞의 책, 73-74쪽.

〈참고문헌〉

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국가전자도서관 <http://viewer.nl.go.kr>
국회임시회의속기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
김광주, 『지구의 비극』, 수도문화사, 1951.
김광주 외, 『피난민은 서글프다』, 수도문화사, 1951.
김성철, 『역사 앞에서』, 정병준 해제, 창작과비평, 2016.
김 송 편, 『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한국전란1년지』(1950-1951), 1951.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한국전란2년지』(1951~1952), 1953.
부산일보사 기획연구실, 『임시수도천일』(하), 부산일보사, 1984.
유진오 외, 『고난의 90일』, 수도문화사, 1950.
염상섭, 『취우·새울림·지평선』, 글누림, 2017.

2) 연구성과

강성현, 「한국전쟁기 예비검속의 법적 구조와 운용 및 결과」, 『사회와역사』103권0호, 2014.
———,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피난민 인식과 정책」, 『사람』 33호, 2009.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공준환,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해 조사의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권현익, 『전쟁과 가족』, 정소영 역, 창작과비평, 2020.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5.
김아람, 한국전쟁기 난민정착사업의 실시와 구호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1, 2017.
김춘수, 「한국전쟁 시기 계엄의 성격」, 『사람』 50권0호, 2014.
김태우, 『폭격』, 창작과비평, 2013.
———,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32, 2015.
도미야마 이치로, 『시작의 앞』, 심정명 역, 문학과지성사, 2020.
서동수, 「한국전쟁기 유진오의 글쓰기와 피난의 윤리성」, 『우리말글』 52, 2011.
서만일, 「한국전쟁 초기 민사정책: 부산의 피난민 통제 및 구호 그리고 경제 복구」, 『석당논총』 72권 0호, 2018.
서희경, 「한국전쟁에서의 인권과 평화: 피난민 문제와 공중폭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

- 구』 21권 1호, 2012.
- 스테파니 데구이어 외, 『권리를 가질 권리』, 김승진 역, 위즈덤하우스, 2018.
- 신동진, 「귀속재산에 대한 토지개혁과 제문제」, 『고려법학』 95권 0호, 2019.
- 윤해동, 「식민지근대와 공공성」, 『사이』 8권 0호, 2010.
- 이민영, 「전시의 서울과 피난의 (불)가능성」, 『현대소설연구』 71호, 2018.
- 이연식, 「해방 직후 서울 소재 '적산요정' 개방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1946~1947년 제1·2차 개방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84호, 2013.
- 이치노카와 야스타카, 『사회』, 강광문 역, 푸른역사, 2015.
- 이현주, 「해방 직후 적산처리 논쟁과 대일배상 요구의 출발」, 『한국근현대사연구』 72집, 2015.
-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박탈』, 김웅산 역, 자음과 모음, 2016.
- 질 들뢰즈,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 차철욱 외,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공간」, 『민족문화논총』 제45집, 2010.
- 테오도르 휴즈, 「염상섭의 적산문학」, 염상섭, 『취우』, 글누림, 2018.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외 역, 한길사, 2010.
- _____, 『혁명론』, 홍성표 역, 한길사, 2007.
- 황병주, 「해방 공간 한민당의 냉전 자유주의와 사유재산 담론」, 『동북아역사논총』 제59호, 2018.

<Abstract>

The Korean War, Possession, and Dispossession: On the site of Loss and Destruction of Homes in Wartime

Kim Yerim*

This study explores the plight and process of evacuees and war victims becoming refugees in the aspect of the loss and destruction of homes during the Korean War.

The majority of pre-existing research have studied the Korean War from a political context.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war itself was a socio-economic event. The kernel of the war as a socio-economic event is that it agitated the existing order of ownership or possession, mainly in the form of its ambiguation, confiscation or forfeiture. This paper understands the core process of becoming refugees as dispossession, especially through the loss and destruction of the home. The bombing, occupation and recapture brought about a large number of people who were divested of residence. Poverty and wretched plight in wartime society was discovered by the state and governance of bio-politics were imposed: to make places to accommodate refugees as part of the War Refugee Relief Policies and to forbid the illegal and violent occupation of ‘yeoksan’ or the property of collaborators. Extortion of ‘yeoksangaok’ or the house of collaborator was mainly perpetrated by the military and the police, which showcased their unlawful pillage of civilians' possessions. There were limits and restrictions on the relief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the state at war which implemented and permitted violence. Social communities were required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bearing the burden of refugees, but the owners of real property seeking private interests were not so cooperative. Those who lost their residences could not resolve the troubles of life. They wandered from place to place and became refugees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 Professor of University College of Yonsei, Yonsei univ. Seoul, Korea.

Keywords: Korean War, possession, refugee, dispossession, house, reception center for refugees, property of collaborator (yeoksan)